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2. . . (제 회)	

정 보 통 신 공 사 업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자가 정보통신설비를 시공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서 중소 공사업자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대기업인 공사업자 기준과 도급 가능한 공사금액의 하한을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법률 제18737호, 2022. 1. 11. 공포, 2022. 7. 12.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인정종목에 국가기술자격 종목 일부 추가, 전자형 감리원자격증 및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도입에 따른 기재사항 변경 절차의 마련 등 ICT 기술 발전·디지털 전환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환경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보완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전자형 감리원자격증 및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의 기재사항 변경 절차 마련 등(안 제9조, 제16조, 제23조, 제39조)

정보통신 기술 발전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환경 변화, 정보통신공사 분야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감리원자격증

및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을 전자형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형 발급으로 인해 재발급(분실, 훼손)사유가 소멸됨에 따라 재발급 규정을 삭제하고, 감리원자격증 및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의 기재사항 변경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공사업 등록의 신청 또는 공사업자의 변경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에 출력물을 포함하도록 함.

나. 대기업인 공사업자 기준 및 도급 공사금액 하한 신설(안 제24조의2)

정보통신공사 분야에서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및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금액을 규정하고, 하한을 적용하는 공사 중 수의계약 대상 사유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다.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업무 위탁 근거 마련(안 제53조제2항제3호)

정보통신공사 관련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위탁하는 근거를 신설함.

라.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 자격 인정종목 추가(안 별표 2 및 별표 6)

감리원·정보통신기술자 자격 인정종목에 정보통신 융합설비 구축에 필요한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추가함.

마. 무자격자의 광고·표시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 10)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육성·보호,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국민피해 방지를 위하여 무자격자의 표시·광고 위반행위당 과태료 부과기준을 300만원으로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처 협의 전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발급 또는 재발급”을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발급 또는 재발급한”을 “발급한”으로 한다.

⑤ 감리원이 감리원자격증 기재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감리원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야하는 경우 기본증명서를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리원자격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경력수첩사본”을 “경력수첩사본(출력물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제5호 중 “사본”을 “사본(출력물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4조의2를 제24조의3으로 하고,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등) ① 법 제24조의2제5항에 따른 대기업인 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공사업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공사업자
3.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인 공사업자

② 법 제24조의2제5항에 따라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은 10억원으로 한다. 다만,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 등이 관련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39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발급 또는 재발급”을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발급 또는 재발급한”을 “발급한”으로 한다.

⑤ 정보통신기술자가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기재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야하는 경우 기본증명서를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53조제2항제3호 중 “평가·공시 및 정보의 제공”을 “평가·공시, 정보의 제공 및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1호다목 중 “토목 또는 철도신호”를 “토목, 철도신호,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임베디드, 로봇소프트웨어개발, 로봇하드웨어개발, 로봇기구개발, 광학, 광학기기 또는 의공”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토목 또는 철도신호”를 “토목, 철도신호, 정보보안, 광학기기 또는 의공”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정보처리 또는 철도전기신호”를 “정보처

리, 철도전기신호, 광학 또는 의료전자”로 한다.

별표 6 제1호 비고 제1호다목 중 “토목 또는 철도신호”를 “토목, 철도신호,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임베디드, 로봇소프트웨어개발, 로봇하드웨어개발, 로봇기구개발, 광학, 광학기기 또는 의공”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토목 또는 철도신호”를 “토목, 철도신호, 정보보안, 광학기기 또는 의공”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정보처리 또는 철도전기신호”를 “정보처리, 철도전기신호, 광학 또는 의료전자”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전파통신, 전파전자”를 “전파전자통신”으로, 같은 호 중 “정보처리 또는 철도신호”를 “정보처리, 철도전기신호, 광학 또는 의료전자”로 한다.

별표 10 제3호의2를 제3호의3으로 하고, 같은 란(중전의 제3호의2) 제3호의3의 해당 법조문란 중 “제3호의2”를 “제3호의3”으로 하며, 같은 표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14조의2를 위반하여 공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자	법 제78조제1항 제3호의2	300만원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4조의2 및 별표 10 제3의제2호·제3호 : 2022년 7월 12일
 2. 제9조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16조제1항제3호, 제23조제2항제5호, 제39조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 : 이 영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제2조(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최초로 발주하는 정보통신공사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감리원의 인정신청 등) ① (생략)	제9조(감리원의 인정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감리원으로서 등급의 변경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감리원등급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감리원자격증</u>	<u><삭 제></u>
3. (생략)	2. (현행 제3호와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리원인정신청인 또는 제2항에 따른 등급변경신청인에게 감리원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하여야 한다.	④ ----- ----- ----- 발급-----.
⑤ <u>감리원이 감리원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감리원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감리원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감리원자격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⑤ <u>감리원이 감리원자격증 기재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감리원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기본증명서를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리원자격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⑦ ----- ----- ----- ----- -----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제16조(공사업 등록의 신청 등) ① ----- ----- -----	
<신 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감리원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한 때에는 감리원자격증 발급대장에 이를 일련번호순으로 기록한다. ⑦ (생 략) 제16조(공사업 등록의 신청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	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사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2. (생 략) 3.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과 해당 정보통신기술자의 <u>경력수첩사본</u> 4. 5. (생 략) ② ~ ④ (생 략) 제23조(공사업자의 변경신고사항) ① (생 략)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정보통신기술자의 변경: 경력수첩 <u>사본</u>	----- ----- ----- ----- ----- ----- 1. 2. (현행과 같음) 3. ----- ----- <u>경력수첩사본(출력물을 포함한다)</u> 4. 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공사업자의 변경신고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 -- <u>사본(출력물을 포함한다)</u>

③ ~ ⑤ (생 략)
<신 설>

제24조의2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등) ① 법 제24조의2제5항에 따른 대기업인 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공사업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공사업자
 3.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인 공사업자
② 법 제24조의2제5항에 따라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은 10억원으로 한다. 다만,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24조의3 (현행 제24조의2와 같

제39조(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신청 등) ① (생 략)
 ② 정보통신기술자로서 등급의 변경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등급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3. (생 략)
 ③ (생 략)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인정신청인 또는 제2항에 따른 등급변경 신청인에게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을 발급 또는 재발급하여야 한다.
 ⑤ 정보통신기술자가 정보통신기술자격자 경력수첩을 잃어버리거나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서에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

음)
 제39조(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1. (현행과 같음)
<삭 제>
 2. (현행 제3호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 발급 -----

 ⑤ 정보통신기술자가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기재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기본증명서를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경력수첩을 발급 또는 재발급한 때에는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발급대장에 이를 적어야 한다.	⑦ ----- 발급한 ----- -----.
⑦ (생 략)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제5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 략)	제5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1. ~ 2. (생 략) 3. 법 제27조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 시공능력의 평가·공시 및 정보의 제공에 관한 업무 4. 삭 제 5. ~ 9. (생 략)	② ----- ----- ----- -----. 1. ~ 2. (현행과 같음) 3. ----- 평가·공시, 정보의 제공 및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 5. ~ 9. (현행과 같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2] 비교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2] 비교
1. (생 략) 가. ~ 나. (생 략) 다. 기사: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토목 또는 철도신호	1. (현행과 같음)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기사: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토목, 철도신호,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임베디드, 로봇소프트웨어개발, 로봇하드웨어개발, 로봇기구개발, 광학,

라. 산업기사: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u>토목 또는 철도신호</u> 마. 기능사: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카드, <u>정보처리 또는 철도전기신호</u> 2. ~ 5. (생략)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6] 비고 1. (생략) 가. ~ 나. (생략) 다. 기사: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u>광학기기 또는 의공</u> 라. 산업기사: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u>토목, 철도신호, 정보보안, 광학기기 또는 의공</u> 마. 기능사: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카드, <u>정보처리, 철도전기신호, 광학 또는 의료전</u> <u>산</u> 2. ~ 5. (현행과 같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6] 비고 1. (현행과 같음)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기사: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u>토목 또는 철도신호</u> 라. 산업기사: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u>토목 또는 철도신호</u> 마. 기능사: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카드, <u>정보처리 또는 철도전기신호</u> 2. ~ 5. (생략)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범위 비고 1. (생략)	<u>토목, 철도신호,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임베디드, 로봇소프트웨어개발, 로봇하웨어개발, 로봇기구개발, 광학, 광학기기 또는 의공</u> 라. 산업기사: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u>토목, 철도신호, 정보보안, 광학기기 또는 의공</u> 마. 기능사: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카드, <u>정보처리, 철도전기신호, 광학 또는 의료전</u> <u>산</u> 2. ~ 5. (현행과 같음)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범위 비고 1. (현행과 같음)
---	--	--	--	--

기능사: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카드, 정보처리 또는 철도신호

2. ~ 5. (생략)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0]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생략)	과태료 금액 (생략)
1. ~ 3. (생략)	(생략)	(생략)
<신설>	<신설>	<신설>
<u>3의2.</u> 제17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사업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경영한 자	법 제78조 제1항제3호의2	300만원
4. ~ 11. (생략)	(생략)	(생략)

기능사: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카드, 정보처리, 철도전기신호, 광학 또는 의료전자

2. ~ 5. (현행과 같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0]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현행과 같음)	과태료 금액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u>3의2.</u> 법 제14조의2를 위반하여 공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자	법 제78조 제1항제3호의2	300만원
<u>3의3.</u> (현행과 같음)	법 제78조 제1항제3호의3	300만원
4.~11.(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연락처	(044) 202 - 6424